



학대노인 우리는 지킴이!

알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

신체적 학대

신체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
예) 설명할 수 없거나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.



정서적 학대

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
예) 소외시키거나 말 행동을 통해 무시하고 욕을 한다.



성적 학대

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
예) 성적 수치심을 주는 농담을 하거나 몸을 만진다.



경제적 학대

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
예) 허락 없이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가로채거나 사용한다.



방임

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예) 조치가 필요한 노인에게 의식주 및 의료적 처치 등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.



유기

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예)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거나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 시간 후 연락을 두절한다.



24시간

노인학대 신고·상담전화



노년보호전문기관

1577-1389

신고자의 비밀보장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(노인복지법 제39조제3항).

직원/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호존중 수칙

인권침해 유형

1



✓ 폭언

폭력 뿐만 아니라 욕설, 비하적 언어를 사용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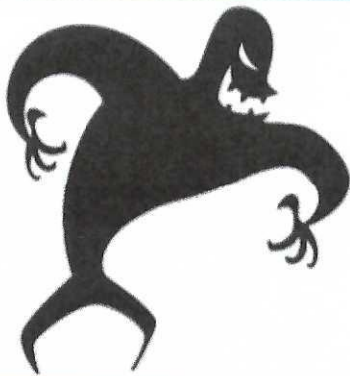
2



✓ 폭력

신체적인 손상을 가치고 정신적·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인 행위

3



✓ 공포심 불안감 유발

악의에 찬 언어로 위협하는 행위

4



✓ 성추행 / 성희롱

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패설을 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행위

존칭을 사용하여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신뢰하여
함께 따뜻한 지평선요양원을 만들어 갑니다.

배려와 존중은 일상 속 행복의 시작입니다.

"어르신과 종사자의 행복한 동행을 만들겠습니다."

無 폭언

폭언은 마음의 흉기



無 폭행

종사자도 누구의
소중한 가족입니다.



無 성희롱

언어적, 시각적,
육체적 성희롱 금지



지평선 요양원